

---

#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

---

2022년 5월 25일



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

# 목 차

1. 개요	1
2.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	2
3. 중처법의 목적과 정의	3
4. 산안법, 산재보험법과의 관계	4
5. 적용범위	6
6.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	6
7. 도급, 용역,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	10
8.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처벌	11
9. 중대시민재해	12
10.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	13
11. 손해배상의 책임, 정부의 지원	14

# 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’ 의 이해

## 1 개요

- 1953년 5월 10일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범이 명시된 후 1981년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(이하 ‘산안법’) 제정. 산안법은 1982년 7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고 1990년, 2019년 2차례에 걸쳐 전면 개정
- 노동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산안법 강화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산안법 체제 하에서는 법 위반으로 노동자를 사망케 한 법인 대표나 최상위 기관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음. 이는 재해 발생 사고 현장에 대한 직접 지배·지휘 관계 입증에 힘들기 때문
- 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산안법 위반 사건의 처벌수준은 지극히 미약. 전체 818건 중 징역·금고형 등 실형에 처해진 경우가 37건(4.5%)에 불과, 집행유예가 대다수인 781건(95.5%)으로 나타남
- 그나마 실형의 경우도 평균 형량이 징역은 14.2개월, 금고는 10.8개월에 그치고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아닌 하급 관리자에 대한 처벌로 그침
- 매년 산재로 2천명이 넘는 노동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처벌 수준과 대상에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음
- 위와 같은 산안법의 한계를 보완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노동자 안전보건 확보 방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(이하 ‘중처법’)이 제정돼 2022년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감
- 중처법은 특히 지금까지 특별히 규제되지 않던 4·16 세월호 참사,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과 같은 사회적 재난을 중대시민재해로 입법화한 특징이 있음. 또 산안법과 같이 안전·보건 확보 의무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처벌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

## 2 |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

법	시행령
<p>[시행 2022. 1. 27.]</p> <p><b>제1장 총칙</b>            제1조(목적)            제2조(정의)</p> <p><b>제2장 중대산업재해</b>            제3조(적용범위)            제4조(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<b>확보의무</b>)            제5조(도급·용역·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<b>확보의무</b>)            제6조(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<b>처벌</b>)            제7조(중대산업재해의 <b>양벌규정</b>)            제8조(안전보건교육의 <b>수강</b>)</p> <p><b>제3장 중대시민재해</b>            제9조(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<b>확보의무</b>)            제10조(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<b>처벌</b>)            제11조(중대시민재해의 <b>양벌규정</b>)</p> <p><b>제4장 보칙</b>            제12조(형 확정 사실의 <b>통보</b>)            제13조(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<b>공표</b>)            제14조(심리절차에 관한 <b>특례</b>)            제15조(손해배상의 <b>책임</b>)            제16조(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<b>보고</b>)</p>	<p>[시행 2022. 1. 27.]</p> <p><b>제1장 총칙</b>            제1조(목적)            제2조(<b>직업성 질병자</b>)            제3조(공중이용시설)</p> <p><b>제2장 중대산업재해</b>            제4조(<b>안전보건관리체계</b>의 구축 및 이행 조치)            제5조(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)            제6조(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)            제7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</p> <p><b>제3장 중대시민재해</b>            제8조(원료·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)            제9조(원료·제조물 관련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)            제10조(공중이용시설·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)            제11조(공중이용시설·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)</p> <p><b>제4장 보칙</b>            제12조(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<b>공표</b>)            제13조(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<b>보관</b>)</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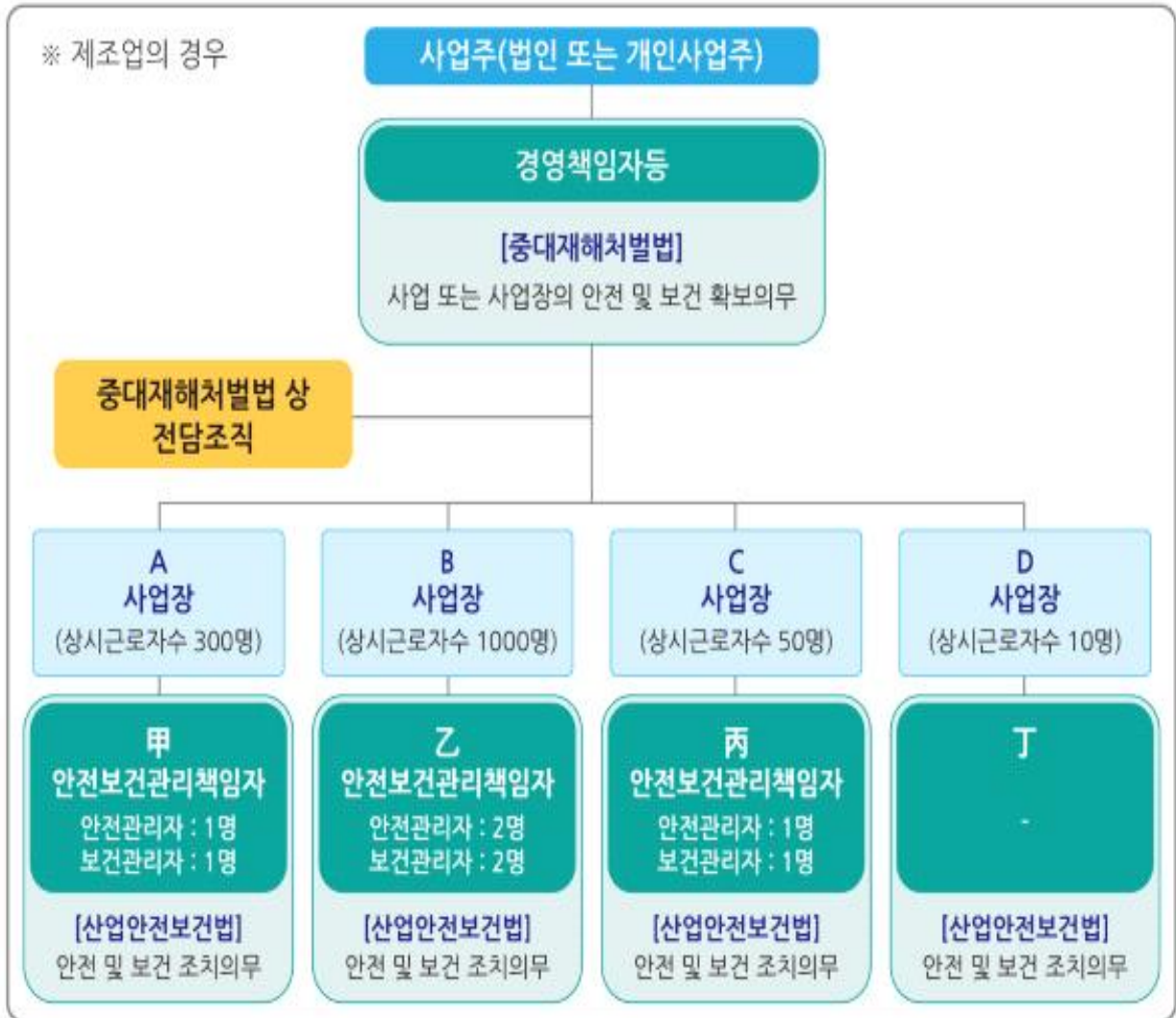
### 3 중처법의 목적과 정의

중 처 법	<p>제1조(목적)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,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·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<b>사업주, 경영책임자,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</b></p> 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중대재해”란 “중대산업재해”와 “중대시민재해”를 말한다.</li> <li>2. “중대산업재해”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.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</li> <li>나.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</li> <li>다.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<b>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</b></li> </ul> </li> <li>3. “중대시민재해”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,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, 제조, 설치,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. 다만,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.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</li> <li>나.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</li> <li>다.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</li> </ul> </li> <li>4~6. 생략(공중이용시설, 공중교통수단, 제조업)</li> <li>7. “종사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「근로기준법」 상의 노동자</li> <li>나. <b>도급·용역·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</b></li> <li>다.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</li> </ul> </li> <li>8. “사업주”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,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.</li> <li>9. “경영책임자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</li> <li>나.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</li> </ul> </li> </ol>
시 행 령	<p>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직업성 질병자)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다목에서 “<b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</b>”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.</p>

## 4 산안법, 산재보험법과의 관계

### ○ 산안법과의 관계

- 산안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안전·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산재를 예방하는 데 주 목적이 있으므로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 안전·보건에 관한 기준과 **사업주의 조치의무, 산재예방 책임자** 등에 관해 규정
- **중처법은 준수대상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**(사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)임. 준수해야 할 안전·보건 확보의무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,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와 위반 시 처벌 등을 규정
- 중처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안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어 **산안법의 산재 개념에 들지 않는다면 중처법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없음**



<출처 :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, 고용노동부 2021년>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0. 5. 26.>

1. “산업재해”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·설비·원재료·가스·증기·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.
2. “중대재해”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.

<시행규칙> 제3조(중대재해의 범위)

1.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
2.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
3.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

○ 산업재해보상보험법(이하 ‘산재보험법’)과의 관계

- 산재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는 업무로 인한 부상, 질병, 사망 뿐 아니라 치유 후 정신적·육체적 노동능력이 상실·감소된 상태의 장애와 출퇴근 재해도 포함되므로 중처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아도 산재보험법의 업무상재해에는 해당할 수 있음
- 산재보험법은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·공정하게 보상하며 산재 노동자의 재활, 사회복귀 촉진에 목적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가 없음
- 중처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개인 사업주,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·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를 발생토록 한 경우 형사처벌

5

적용범위

제3조(적용범위)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(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

- 여기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
  - 장소적 개념이 아니므로 본사와 생산공장, 학교법인 산하의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 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임
- 사업의 종류,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 불문

-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의미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닌 **경영상 일체**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하는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근로자를 합한 수
  - 외국인 노동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며 불법 입국자이거나 불법 체류자인지 여부는 상관 없음
  - 파견노동자, 일용노동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
-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노동자
  - **도급·용역·위탁 등을 행한 제3의 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플랫폼 종사자**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(**종사자**)에는 포함되지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에는 포함되지 않음

## 6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

중치법	<p><b>제4조(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)</b>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·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<b>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</b></li> <li>2. 재해 발생 시 <b>재발방지 대책</b>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</li> <li>3.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<b>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</b></li> <li>4. <b>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</b></li> </ol> <p>② 제1항제1호·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
중치법 시행령	<p><b>제4조(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)</b>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·보건에 관한 목표와 <b>경영방침</b>을 설정할 것</li> <li>2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<b>총 3명 이상(1,500억원 이상 건설업)건설</b>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·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.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.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<b>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</b></li> <li>나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에 대해 같</li> </ul> </li> </ol>

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

3.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·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,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·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. 다만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,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·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.

4.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

가.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·보건에 관한 인력, 시설 및 장비의 구비

나. 제3호에서 정한 유해·위험요인의 개선

다.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5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5조,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(이하 이 조에서 “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”이라 한다)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

가.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

나.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,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·관리할 것

6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,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.

7.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·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,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. 다만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·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·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·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.

8.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,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

가. 작업 중지, 근로자 대피,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

나.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

다.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

9.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, 용역,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·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,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, 용역,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

가. 도급, 용역,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·절차

나. 도급, 용역,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·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

다.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, 용역,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·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

**제5조(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)** ① 법 제4조 제1항제4호에서 “안전·보건 관계 법령”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·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.

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**반기 1회 이상 점검**(해당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하고,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

2.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·집행하도록 하는 등 **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**를 할 것

3.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**유해·위험한 작업**에 관한 안전·보건에 관한 **교육**이 실시되었는지를 **반기 1회 이상 점검**하고,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

4.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,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

- 중처법은 안전·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처벌하므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내용이 핵심이며, **근본적인 목적은 중대재해 예방**임
- 보호대상은 종사자이며 종사자는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 뿐 아니라 도급·용역·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 없이 **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각 단계별 수급인, 수급인에게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모두**를 포함
- 중처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는 **산안법에서 조직의 구성과 역할을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제**에 비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종사자의 안전·보건 유지·증진을 위해 사업 전반을 운영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음
- 중처법 시행령에서 정한 **안전보건관리체계는 아래의 9가지로 구성**
  - 1) 안전·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
  - 2) 안전·보건 업무를 총괄, 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
  - 3) 유해·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, 점검 및 필요한 조치
  - 4)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·보건에 관한 인력, 시설, 장비 구비와 유해·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
  - 5)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(권한과 예산 부여,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·관리)
  - 6) 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

- 7)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,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·이행 여부 점검
- 8)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
- 9) 도급·용역·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·절차 마련, 관리비용·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, 이행여부 점검

○ 안전·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시 고려사항

-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 등의 특성과 조직 규모에 적합할 것
- 달성 가능한 내용으로 측정 가능하거나 성과평가가 가능할 것
- 안전·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간에는 일관성이 있을 것
- 종사자, 이해관계자 등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종사자와 협의를 통해 수립
- 목표 수정 필요성이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목표를 수정해 추진

○ 유해·위험요인 파악, 개선은 산안법령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행

○ 산안법 제 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란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, 해당 유해·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(빈도)과 중대성(강도)을 추정·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

- 경영책임자가 위험성평가를 보고 받은 후 사업장에서 유해·위험요인의 개선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

※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-53,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참고

○ 산안법 제 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는

-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은 토사석·광업,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,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, 1차 금속 제조업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,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
-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은 농업, 어업,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, 컴퓨터 프로그래밍·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, 정보서비스업, 금융 및 보험업, 임대업, 전문·과학기술 서비스업, 사업지원 서비스업, 사회복지 서비스업
- 건설업의 경우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(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)
-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은 상기 업종을 제외한 사업

- 산안법 제 64조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노동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**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체**를 말함
  - 산안법 제 75조의 협의체는 120억원(토목공사 150억원) 이상 건설공사 도급인이 해당 건설현장에 **노동자와 사용자 위원을 동수로 구성·운영하는 노사협의체**를 말함
- 산안법 이외의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은 광산안전법, 원자력안전법, 항공안전법, 선박안전법,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, 폐기물관리법,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, 선원법,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등임

## 7 | 도급, 용역,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

중  
처  
법

제5조(도급, 용역,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)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, 용역,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, 장비,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
- 건설공사 발주자의 경우, 발주도 민법상 도급의 일종이나 발주자는 종사자가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·관리·운영을 하는 자가 아닌 **주문자**에 해당하므로 종사자에 대한 안전·보건 확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
- 실질적으로 **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책임**이 있는 경우란 **시설, 장비, 장소에 대한 소유권, 임차권 등 사실상 지배력**이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는 경우를 말함

## 8 |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처벌

중  
처  
법

제6조(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)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.  
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

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
**제7조(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)**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제6조제1항의 경우: 50억원 이하의 벌금

2. 제6조제2항의 경우: 10억원 이하의 벌금

**제8조(안전보건교육의 수강)**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시  
행  
령

**제6조(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)**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(이하 “안전보건교육”이라 한다)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.

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·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

2.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

③~⑪ 생략

○ 사업주가 안전·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

- 사망에 대해서는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죄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,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
-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에 대해서는 안전보건확보의무치상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,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
- 중대산업재해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5년 이내에 다시 상기 죄를 지은 경우는 각 항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

○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함

- 개인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
- 안전·보건 의무 위반 여부와 관계 없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만으로 안전보건교

육을 이수해야 함

-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-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산안법 제 174조에 의한 수강명령에서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 이하로 교육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

## 9 중대시민재해

### 중 처 법

**제9조(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)**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**생산·제조·판매·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, 제조, 관리상의 결함**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,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2.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3.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4.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**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, 설치, 관리상의 결함**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,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2.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3.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4.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**제3자에게 도급, 용역,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,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** 다만,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, 장비,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
④ 제1항제1호·제4호 및 제2항제1호·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10조(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)**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

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.

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**제11조(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)**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들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제10조제1항의 경우: 50억원 이하의 벌금
2. 제10조제2항의 경우: 10억원 이하의 벌금

## 10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

중  
처  
법

**제13조(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)**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, 발생 일시와 장소,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,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시  
행  
령

**제12조(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)**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(이하 이 조에서 “공표”라 한다)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.

1. “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”라는 공표의 제목
2. 해당 사업장의 명칭
3.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·장소
4.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
5.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(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의 위반사항을 포함한다)
6.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④ 공표는 관보, 고용노동부나 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표기간은 1년으로 한다.

- 안전·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, 기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가능토록 하고, 명예나 신용의 침해 위협을 통해 종사자에 대한 안전·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
- 산안법 제 10조에서는 사망재해자 연간 2명 이상 발생,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이상, 중대산업사고 발생, 산재 발생사실 은폐, 산재 발생 보고 최근 3년간 2회 이상 누락 시 산재 발생건수,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

## 11 손해배상의 책임, 정부의 지원

중 치 법	<p><b>제15조(손해배상의 책임)</b>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,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. 다만,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항 생략</p>
중 치 법	<p><b>제16조(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)</b>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·시행과 발생원인 분석</li> <li>2. 사업주,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</li> <li>3. 사업주,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</li> <li>4.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</li> </ol> <p>② 정부는 사업주,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·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,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
산 안 법	<p><b>제4조(정부의 책무)</b>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. &lt;개정 2020. 5. 26.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</li> <li>2.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</li> <li>3. 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, 지도 및 지원</li> <li>4.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</li> <li>5.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·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</li> <li>6.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·개발 및 시설의 설치·운영</li> <li>7.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·관리</li> <li>8.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·감독</li> </ol>

9.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·증진

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,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4조의2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,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 
[본조신설 2021. 5. 18.]

**제4조의3(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, 교육,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-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·보건 확보를 위해 이행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, 이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
  - 산안법 제 4조 정부의 책무에서도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

#### ※ 산안법 상 산재예방 활동의 한계

- 산재예방기금은 산재보험기금의 3% 출연금으로 사용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활동은 이뤄지지 않음
-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특고 영역 등은 산재예방 지원 및 관리·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
  - 산업안전은 전기·기계·화공·건설·인간공학 분야, 산업보건은 산업의학·산업간호·산업위생 분야를 말하며 산안법은 이에 대한 기술법에 해당
  - 산안법에서는 산재예방 활동·관리가 교육, 기술지원, 감독 등에서 사업장 단위로 설계되고 행해지고 있음
- 산재가 빈발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고, 안전·보건관리 대행 의무조차 없어 산재예방 활동을 기대할 수 없음
-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안법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, 안전보건관리규정, 교육, 영업정지 요청 등 법 적용 예외규정이 있고 중처법에서는 아예 적용 제외